


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

[시행 2024. 11. 1.] [대통령령 제34456호, 2024. 4. 30., 일부개정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네트워크정책과) 044-202-6425, 6427

제37조의2(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·관리 대상 등)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.
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. 다만,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.
 - 가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
 - 나.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(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제외한다)
2.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
- ② 법 제37조의3제2항 후단에서 “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말한다.
- ③ 법 제37조의3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5년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24. 10. 29.]

제37조의3(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의 자격기준)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
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
2.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

[본조신설 2024. 10. 29.]

부칙 <제34965호, 2024. 10. 29.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·관리기준 준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)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중 제3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·관리 준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·관리기준을 준수하고,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.
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: 2025년 7월 18일
2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: 2026년 7월 18일
3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: 2027년 7월 18일